



## VI. 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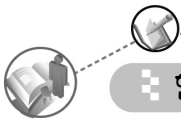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1. 진입장벽 특징 • 293
2. 도입 취지 및 배경 • 294
3. 주요 진입장벽 • 297
4. 진입장벽 피해사례 • 306
5. 한국 기업을 위한 제안 • 308



# VI

## 1. 진입장벽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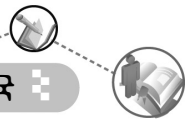
- 태국의 수입정책은 특히 자국 생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태국의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11.4%이며 일부 관세는 80%에 달하여 아직까지 높은 관세가 많은 부분에서 진입 장애요인으로 남아있음
  - 최고율 관세는 농산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주류, 식자재 등을 포함,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입품에 적용됨
- 태국의 조세행정은 복잡하고 불투명함
  -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높으며
  - 수입관세, 소비세, 기타 수수료 등을 계산할 경우 대다수 수입 알코올에 대한 세금부담은 약 400%에 달함
- 농식품은 임의적인 수입허가 및 검역위생조치와 더불어 고관세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함
  - 소비자 편의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전형적으로 30~50%이며 일부는 최고 90%에 달하여 ASEAN 국가 중 가장 높고, 육류, 신선과일·채소 등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높음
    - 예 미국 : 프렌치후라이 - 태국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관세 30%
    - 와인 - 수입관세, 소비세, 기타 수수료 계산시 거의 400%의 세금 부과
    - 사과는 10%이나 배, 체리는 30~40%(미국 과일 생산자들은 높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손실이 연간 최고 15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태국의 전체적인 수입정책은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한 불투명한 가격통제를 시행해왔고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상당한 물량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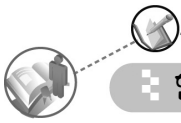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또한 태국은 수입업자가 수입상품에 대한 허가를 얻기 전에 일정량의 자국 생산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
- ※ 태국정부는 또한 수입허가 수수료를 요구(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톤당 142달러, 가금류는 286달러, 내장은 142달러)
- 특정 농산품에 대한 SPS 기준도 종종 사전 통지없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 세관장벽
  - 태국 관세청의 투명성 결여와 상당한 자유재량 권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태국이 WTO 관세 평가 협약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태국 관세청장은 수입품의 관세액을 임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 미국 와인 및 주류 업계는 2006년 9월 이후 수입업자들이 제출한 거래 송장 금액이 정기적으로 거부되고 태국 세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공제된 가격으로 대체되었다고 보고
  - 태국 세관은 위반 금액 비율에 근거하여 위반업체를 적발한 세관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세수 최대화를 장려하고 있는 것임
  - 들리는 바에 의하면 관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문제라고 함
- 수출보조
  - 태국은 일부 가공식품에 있어서 교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보조금 역할을 수행
  - 여기에는 다양한 세제혜택, 수입관세 감면,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 금융 등이 포함됨

## 2 도입 취지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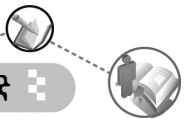
- 태국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진보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사실로 증명할 수 있듯 건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 태국은 보건 분야에 최고 3천억 바트(미화 6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평균10%씩 증가한



- 수치임. 2001년에 농업 부분은 2.1% 성장하였는데 가축류에서 가장 높은 4.3%를 기록하였고 가공 2.7%, 서비스 2.3%, 농작물 2.1%, 수산 0.5%가 뒤를 이었음
- 현재, 태국에서 관세는 개발 프로젝트에 쓰이는 정부 세입의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수입으로 인한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음. 이 때문에 각 국가들이 관세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있음
  - 한편으로는 관세를 통해, 아직은 동등한 활동무대에서 경쟁하기 어렵지만 향후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산업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자동차, 섬유, 의류, 가공식품과 같은 다수의 태국 내 선도 산업들은 한 때 높은 관세로 보호 받았음
  - 반면 특정 산업의 경우 정부에 보호정책을 계속 요구하는 등, 관세를 통한 보호 정책이 생산자들이 경쟁 시장에 적응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적응 기간을 연장하는데 기인하기도 하였음. 결과적으로 태국의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보호정책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하였음. 이것은 사실상 자금이 소비자에게서 특정 생산자에게로 순이전(net transfer)되는 것임
  - 많은 국가에서 관세 없이는 국제적인 경쟁의 결과로 도태될 수 있는 자국의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적용하며, 이와 같은 보호정책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는 농업 부분이 다수의 국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임.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식품 안전은 항상 많은 국가들에게 최대 관심거리라는 것임. 더구나 농산물은 보통 유통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즉,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농업부분 무역자유화에 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음
  - 식품산업은 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식품 산업은 태국 GDP(국내총생산)가 28.3%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고, 식품 산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3%이며,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는 산업 부분의 총 부가가치의 19%를 차지함. 식품 산업에 쓰이는 원재료의 80% 이상이 국내 시장에서 저가로 공급되고 있음. 이는 식품 산업에 비교우위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줌. 식품 산업은 국내 농산물을 위한 시장과 1천만 명 이상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음. 더욱이 식품 산업은 세계시장점유율의 큰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제1차 경제사회 개발계획(First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B.E. 2504-2509에 통합시켰고, 현재까지 국내교역, 금융, 농업, 산업, 보건, 환경 정책에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포함시켰음. 또한, 국립식품협회(National Food Institute)가 설립되었으며, 식품 안전, 과학기술,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마련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추진 및 지원 외에, 산업 자체에서도 세계화, 자유화 및 세계 무역 규정 및 규제로 인해 감당해야 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 노력을 해왔음
- 식품 산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원료, 노동, 자본, 기술 및 자본, 품질, 효율성 영역에 대한 산업의 관리 능력임. 식품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일반 관리 절차, 정부의 관리 및 지원,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임
- 태국의 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장애물은 다음과 같음
  - ❖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 및 목표가 부족함
  - ❖ 생산자의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부족함
  - ❖ 식품 산업에서 발전 및 기술 이전이 충분치 않음
  - ❖ 생산자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시장 및 규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 ❖ 생산자와 제조업자 간의 연결 시스템이 부족하여 거래 시 지역 협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 식품의 품질과 안전의 문제
- 과거에는 농업-식품 발전계획(Agricultural-Food Development Plan)이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포함되었지만, 태국의 경제 발전은 전자·컴퓨터 분야와 같은 기타 산업 분야에 더 중점을 두었고 이는 신흥공업국이 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 하지만 전자·컴퓨터 산업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해서, 완제품은 수입 원자재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은 불균형을 이뤄왔고 지속될 수 없었음. 따라서 제9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서는 국가적인 전략 계획으로 역량 구축을 위한 계획에서 식품 산업의 발전과, 국가 수준, 기업 수준, 기본 생산 단위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과 지침을 정립하였음. 이 계획의 목표는 태국이 전 세계의 주요 식품 생산자 및 공급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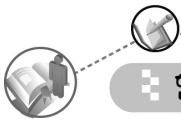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지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농산물 및 식품 처리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임
- 식품 산업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구조적 문제와 기본 문제 모두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를 예로 들자면, 외국의 규정 및 규제에 좌우되는 원재료, 생산, 판매 과정, 정부의 검사 및 인증 시스템, 과학적인 정보의 부족, 원재료 생산업자들과 가공업자들 간의 연계 및 협력 부족 등이 있음. 더욱이 식품 산업 정책을 보완하는 긴밀한 경영전략의 부족은 식품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이러한 문제들은 태국 식품 산업의 생산 및 판매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및 모든 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정부는 태국 식품 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태국은 농업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식품분야 순수출국(net food exporter)임. 태국의 전체 면적은 513,115 평방km이고, 이중 45%가 농업 생산에 쓰이고 있음. 3천6백만 명의 12%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가 GDP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국가 노동력의 60%가 종사하는 농업 분야는 GDP의 13% 밖에 차지하지 못함
  - 태국이 식품 시장에는 조리용 식자재가 풍부함. 태국은 훌륭한 원재료 공급처이기 때문에 지역 생산자들이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음

## 3

## 주요 진입장벽

## 가. 법률 및 규제 [식품안전]

- 태국은 공중 보건부 산하에 FDA와 의학부(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산하에 수산물 검사 및 품질 관리부(Fish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Division),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등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음
- FDA는 건강 식품, 가정용 위험 물질의 사전 통제, 시판 후 모니터링, 건강 식품 감독 및 소비 행동, 공교육 및 정보 서비스 관련 조항,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등을 권장함. FDA는 의학부가 실시하는 식품 분석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 식품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식품법(Food Act,1979) B.E.2522는 식품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함

- 1) 특수 관리
- 2) 표준 관리
- 3) 일반 관리

-특수 관리 식품은 생산 및 제조 등록을 해야 함. 특수 관리 식품 목록에는 통조림을 비롯하여 37개의 식품이 특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준화된 식품에는 소규모 산업이나 가내공업을 통해 생산된 특정 유형의 식품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 식품을 이와 같은 범주로 나누어 품질을 관리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품질 개선을 유지 및 촉진하는 것임. 표준화된 식품에 대한 요구 조건에는 라벨링 등록이 포함되는데, 이는 공중 보건부가 지정한 표준 요구 조건과 일치해야 함.

-일반 식품에는 조리식품/원재료, 저장식품/비저장 식품, 가공식품/비가공 식품이 포함됨. (처음 2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냉동식품은 일반 식품에 해당됨. 일반 식품에는 라벨 부착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일반 식품이 포함됨

○ 라벨링 요구 조건, 식품 첨가물, 식품 오염물질, 잔류 독성 물질, 포장 재료, 식품 착색/착향제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음

○ 식품관리부, 검사부(Inspection Division), 소비자 보호 업무 그룹(Consumer Protection Task Group)은 식품 규제에 관한 역할을 담당함

○ 시장 진입 전에는 제조 허가를 위한 FDA의 식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허가를 위한 FDA의 저장공간 및 창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FDA는 식료품의 식품 등록, 라벨링 승인, 광고 승인들을 요구함. 시장 진입 후에는 시중의 식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감시 청원 감찰이 실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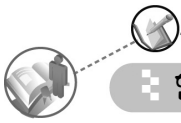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의학부는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 콩 제품(9종류), 옥수수, 옥수수 제품(5종류) 및 초콜릿을 우선 검사함



- 의학부는 식품 관리 활동을 위한 식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의학부는 또한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식품 안전 및 보건기준과 관련한 식품 수출 인증서를 발부함
- 태국 공중 보건부 산하 FDA는 식품법(Food Act, 1979) B.E.2522이 발효됨에 따라 우선 책임이 부여되는 기관임. FDA의 주된 역할은 식품법을 실행 및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임.
  - 1.1 식품 표준 및 상세조건, 위생 및 라벨 요구 조건을 설정
  - 1.2 식료품의 생산 및 수입 통제
  - 1.3 특수 관리 식품의 등록 승인
  - 1.4 광고 승인
  - 1.5 포장 재료 승인
  - 1.6 식품 제조 장소 및 판매 감찰
  - 1.7 식료품 샘플링 및 품질 평가
  - 1.8 압류, 제품 리콜,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 집행
  - 1.9 역학 조사 실시
  - 1.10 식품 제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
  - 1.11 GMP를 사용하여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식용 식물 관리
  - 1.12 기술 협력의 형태로 국제기구, 정부 기관, 민간과의 공동연구
  - 1.13 식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배포 및 교환
  - 1.14 인증서 발부
    - 자유판매(Free-sale) 인증서
    - 위생 인증서
    - GMP 인증서
    - HACCP 인증서

## 나. 관세할당

- 태국은 용안, 코코넛 과육, 우유, 버터, 감자, 양파, 마늘, 차, 건고추, 옥수수, 쌀, 콩, 양파씨, 콩기름, 콩깻묵(bean cake), 사탕수수, 야자유, 팜유, 인스턴트 커피, 담배, 실크 등 23가지의 농산물에 쿼터를 적용함
- 쿼터 적용 수입품에는 낮은 관세율이, 쿼터 미적용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



예를 들어 수입 쿼터가 54,440톤인 수입 옥수수에 대한 관세는 20%이고,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 옥수수에는 73%의 관세율을 적용함. 관세율 할당-수입품의 지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정해진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관세가 적용됨

- 특정한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가 발효되어 자동으로 관세를 올리도록 합의 하였음. 농산물 및 가공 식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최근에는 60%까지 올랐으나 관세율은 평균 30%대이며, 수입 소비자편의 (consumer-ready) 식료품의 관세율은 대략 40~60% 대임. 관세율이 줄어들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제품의 관세율은 30-40%대로 유지될 것임
- 한 비무역장벽 지역인 태국은 현재 WTO 가입국에게는 23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율을 적용함. 육류, 신선 과일, 채소, 콩류(예,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에 대한 관세는 이들 제품이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함

#### 다. 수입제한

- 태국에서는 모든 가공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 등록 신청서에 자세한 성분표와 제조 과정 설명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함.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성분과 제조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수입 장벽으로 간주됨
-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FDA(TFDA)는 식품, 약품, 특정 의료 용구를 수입에 수입 허가제 시행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는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하고, 갱신할 때마다 갱신된 인증서가 필요하며, 주태국 한국 대사관의 무역사무소에도 요구됨. 또한 약품에 대한 수입 허가 또한 매년 갱신되어야 하고, 수수료는 동일함
- 더욱이 TFDA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테스트 규제 사항을 부과함. 2005년 4월1 일자로 발효된 신규 규정에서는 많은 수입 식료품이 다수의 화학첨가물 테스트 및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함. 이 새로운 규정은 수입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위험성 평가가 부족함

## 라. 무역 관련 기술장벽

### ■ 표준, 테스트, 라벨링 및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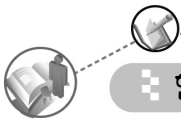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태국 FDA(TFDA)의 표준, 테스트, 라벨링, 인증 대상임. 모든 수입 식료품에 부착하도록 요구되는 사항 중에는 사항에는 태국에서 발행하고 태국 FDA에서 승인 받은 제품명, 제품 설명, 순중량 또는 순부피, 제조일/만료일 등이 있음. TFDA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었지만 최고 1년까지 지연될 수 있음. 모든 가공 식품은 자세한 성분표와 제조 과정 설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공개는 신청자의 영업 비밀을 누출시킬 위험이 있음

### ■ 물량규제 및 수입허가

- 1995년까지 회사들은 식료품, 원재료, 산업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1995년에 콩 제품, 분유 및 커피와 같은 농산물은 엄격한 수입 허가 요구조건을 따라야 했고, 태국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WTO 규정에 따라 관세율 할당 및 관세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음.
- 특히 식료품 등록 신청서에는 제조 과정과 식품 구성 성분에 관하여 종종 자세한 개인 사업 정보를 요구함
- 태국 식품의약청(TFDA)은 모든 식품, 약품, 화장품, 의약품류에 대해 수입 전에 허가를 내주고 있음
  - \* 관련규정 : The regulation of Ministry of Commerce
- 영향 및 문제점 : TFDA의 수입허가 절차가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TFDA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 성분내용을 모두 밝혀야 하지만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제조기술 누출을 염려하여 밝히기를 꺼리고 있음

### ■ 비관세 장벽 및 수입 허가

- 최근에는 의약품과 농산물 비롯한 26개 이상의 범주에서 허가가 요구됨. 허가 신청서에는 공급자의 주문서류, 구매확정서류, 송장 및 기타 적절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의 품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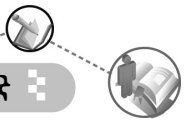
경우 기타 수수료 및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담당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는 다양한 비용, 기간 및 복잡성이 존재함. 게다가, 많은 제품들이 기타 법률 하의 수입 규제에 따라야 함. 예를 들어 가공 식품, 의료 용구, 의약품, 화학 제품, 비타민 및 화장품은 공중 보건부 산하의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태국 정부는 약, 음향 녹음물, 우유, 탄산음료, 연료유, 화학 비료를 포함하는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가격 통제 검토 절차는 투명하지 않음. 가격 통제 결정은 때때로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예 : 환율)에 근거한 것일 수 있고, 관련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검토 없이 장기간 추진되기도 함
- 수입 규정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모순되게 적용됨. 수입업자들이 자주 불평하는 문제는 서류업무 및 절차가 과도하고, 통관과 기타 수입규제기관 간의 협력이 부족하며, 현대적으로 전산화된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임

## 마. 수입규제

### ■ 수입절차

- 건강 식품의 수입은 태국 공중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FDA)의 규제를 받고, 식품과 동일한 법과 규제의 대상이며, 태국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또한 건강 식품은 1979년에 제정된 태국 식품법(Food Act)을 충족시켜야 함. 이 법에 따라 식품이 태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검사 및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식품은 라벨 등록 대상임. 식품 첨가물을 비롯한 모든 내용물의 비율을 등록해야 하며, 이 법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현혹시키는 광고를 금함
- 1979년 제정되어 식품 생산 및 수입을 관장하는 태국의 식품법(Food Act)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태국 내에서 판매하기 전 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 개인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FDA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ivision)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① 식품 안전 및 품질 규정에 따라 식품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목록(사본 2부)
- ② 수입업체 사무실, 저장 공간, 기타 인접 건물/지역의 지도나 그림(사본 2부)
- ③ 저장 공간의 내부 구역 평면도(사본 2부)
- ④ 태국에서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신청자의 등기부등본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서] (사본1부)
- ⑤ 회사의 등록 목적과 공식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기업 등록 인증서(사본1부)
- ⑥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기업 대표 권한을 증명하는 인증서
-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역등록증(사본1부)
- ⑧ 회사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발행한 기업의 국적에 관한 서류(기업의 주주목록을 명시함) (사본1부)

-모든 양식 및 서류는 FDA의 접수 직원들의 정확한 검사를 거쳐야 하며, 직원들은 향후 참조를 위해 접수 번호와 함께 승인된 신청서 양식의 복사본을 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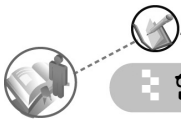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FDA검사자는 수입업체의 작업장과 저장 현장을 검사함. 검사자는 신청자의 사업시설이 신청서에 명시된 식품의 수입을 위한 사무소와 저장 공간에 관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FDA 승인 위원회에 보고함

-승인이 된 후에 FDA는 신청자에게 일반 수입 허가서를 발부할 것이며, 이때 비용은 15,000바트임. 신청서 접수에서 허가증 발부까지 전 과정에 대략 7일(근무일)정도 소요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허가증은 원래의 허가증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대체 허가증을 발부 받아 갱신할 수 있음. 허가증 갱신 수수료는 15,000바트이며,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대체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500바트임

-허가 받은 수입업자가 사무실이나 저장 시설을 개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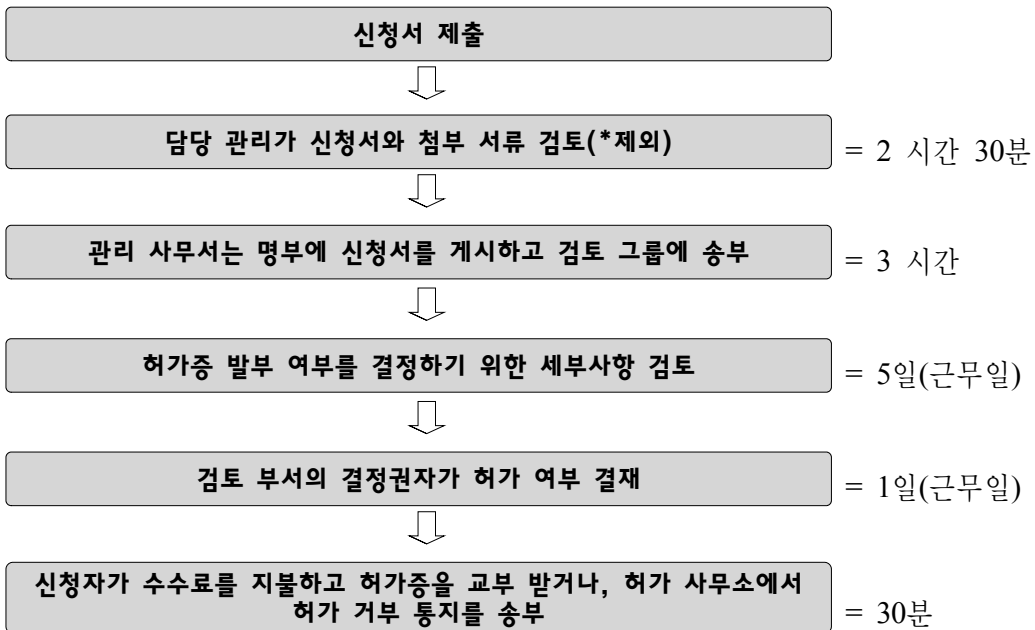
-방콕에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의 주소로 위의 신청서와 서류들을 직접 제출할 수 있음



1	식품관리부 태국 식품의약국(FDA) 공중 보건부	
주소	88/24 Tiwanont Rd., Amphur Muang, Nonthaburi 11000	
전화	(66-2) 590-7220, 590-7421	
팩스	(66-2) 591-8460	
이메일	food@fda.moph.go.th<}0{>food@fda.moph.go.th	
URL	http://www.fda.moph.go.th/eng/food/index.s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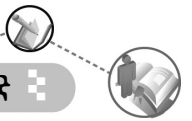
2	약품관리부 태국 식품의약국(FDA) 공중 보건부	
주소	88/24 Tiwanont Rd., Amphur Muang, Nonthaburi 11000	
전화	(66-2) 590-7163	
팩스	(66-2) 591-8390, 591-8489	
이메일	drug@fda.moph.go.th<}0{>drug@fda.moph.go.th	
URL	http://www.fda.moph.go.th/eng/drug/index.stm	

■ 식품의 태국 수출 신청에 관한 흐름도 (Orr, 6)



총 기간 : 7일(근무일)

주 : \*수입 장소 및 식품 저장소를 보여주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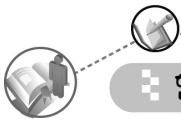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 식품 수출 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① 태국으로의 식품 수출 허가 신청서(샘플 양식 참조)
- ② 국내 등기부등본(사본1부)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노동부에서 발행한 태국 내 노동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함
- ③ 무역 및 상거래 등록증(사본1부)
- ④ 회사의 목적 및 공식 대표자를 명시한 기업 등록증(사본 1부)
- ⑤ 통상부에서 발행하는 기업의 국적에 관한 서류(주주 목록)(사본1부)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태국 내에서의 사업 운영 인증서도 필요함.
- ⑥ 회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의 대리인)의 위임장. 이때 대리인은 소비세 30바트를 내야 함. 이 내용이 기업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날인도 필요함
- ⑦ 다음의 사진 및 평면도 2세트
  - ⑦-1. 수입 장소, 저장 구역 및 인접 건물의 위치 지도
  - ⑦-2. 다음을 명시하는 저장 장소 도면
    - 주변 환경
    - 각 식품에 적합한 장소
    - 적합한 환기 및 조명 시스템
    - 저장될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시설들(필요할 경우)
- ⑧ 태국으로의 식품 수출 허가 신청 인증(\*\*샘플 양식 참조)
  - 태국에서 식품을 생산하거나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단계의 승인 절차를 신청해야 함

### 1) 장소 승인

- 수입
  -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양식 Orr.6을 작성하여 허가 신청)
  - 무역 전시회나 연구를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입된 식품의 경우 (양식 Orr.12를 작성하여 허가 신청 - 무역 전시나 조사 등의 경우)
  - 상품 테스트 또는 등록 목적으로 수입한 식품(양식 Orr.16을 작성하여 허가 신청)



## 2) 제품 승인

- ① 수입 또는 생산한 식품의 범주를 확인하고 식품의 범주를 관장하는 법률 및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함
- ② 해당 식품 범주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신청 방법을 확인함
- ③ 태국으로의 식품 수출허가 또는 식품 제조 허가증/식품 생산 허가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증에 표시된 생산품의 유형을 확인함. 허가증에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식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④ 각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함
- ⑤ 신청서 제출 장소에 허가를 신청함

## 4. 진입장벽 피해사례



### 사례 1

날짜 : 2006년 6월  
 제품 : Oat [시리얼]  
 HS 코드 : 해당사항 없음  
 물량 : 컨테이너 1개

### 업체 정보

**업체명** Sri Chock Chai Supermarket Ltd., Part.

414 Ekamai Rd.,

주소 Klongtun-Nua Wattana  
 Bangkok 10110

전화 (66-2) 906-8899

팩스 (66-2) 379-4711

담당자 Ms. Pathraporn Jariyasatien (마케팅 차장)

비고 Sri Chock Chai Supermarket(SCC)는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태국의 주요 수입공급 업체 중 하나로 주로 수입품을 취급하는 식료품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2년 전 한국에서 크린랩을 수입한 바 있음





## ■ 수입 문제

- 물품을 수입할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외에서 Oat(시리얼)를 수입해도 태국 FDA 테스트 및 통관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이라고 함. 담당자(Ms. Pathraporn)에 따르면, 처음에는 물품이 태국 공중 보건부 산하 FDA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두, 세 번째에는 통과했다고 함. 태국의 실험 검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 해결방안

(Ms. Pathraporn은 이런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 한국의 수출업자는 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수출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연구해야 함. 일부 식료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의 FDA나 통관을 거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각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모든 서류를 사전에 완비해야 함
- 식품 수입업체는 제품의 원산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제품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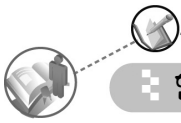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사례 2

날짜 : 2007년 10월  
 제품 : 파인애플 슬라이스 통조림  
 HS 코드 : 해당사항 없음  
 물량 : 컨테이너 1개

### 업체 정보

업체명	Max Food Products International Co., Ltd.
주소	120/43 King Keaw Soi 21/2 Rd. Rachatewa, Bang Plee, Samut Prakarn 10540 Thailand
전화	(66-2) 312-4108
팩스	(66-2) 312-4555
담당자	Ms. Phakkaporn Thanapholaphikit (상무 이사)
비고	Max Food는 과자류의 수입 및 배급업체로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비스킷, 초콜릿 및 가공 식품임. 주요 수입국은 호주이며, 채소 및 신선 과일류도 수입



### ■ 수입 문제

- Ms. Phakkaporn은 신선 과일, 건조 과일, 통조림 과일을 수입하는 것은 법률 및 정책 문제와 연관될 경우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수입업체들이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권함.
- 이 업체 역시 한국에서 처음 통조림 파인애플을 수입하기 시작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과일류를 수입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와 태국 FDA가 발행하는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관 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제품이 태국 FDA에서 거부당하면 수입업자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태국 FDA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였음

### ■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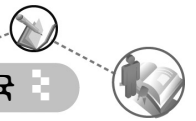
- 이 업체가 겪은 문제는 파인애플에서 잔류 화학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통조림 파인애플에 대한 농림부의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받지 못했던 것임
- 따라서 이 업체는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제품에 농약잔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점검할 것을 권고

## 5 한국 기업을 위한 제안

- 태국 FDA에 따르면, 인삼 제품은 인삼 함량이 1%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 식품으로 간주되므로, 인삼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약품으로 분류될 것임. 이 경우, 약품법(Drug Act), B.E. 2510의 적용을 받는 제약품으로 간주되어, 식품 범주와는 다른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제약 범주에 들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영역을 염두에 두어야 함

-태국 내에서 약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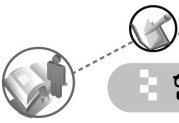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건강제품(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마약류 및 유해 물질)이 품질, 효능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제조, 수입, 수송, 저장 및 판매 단계의 사전/사후 마케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 그밖에도 제약품의 판매 승인 및 허가 과정을 밟아야 함. 태국시장에 약품을 들여오려는 회사 및 개인은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 및 판매를 위해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회사는 약품 샘플을 제조 또는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FDA의 약물관리부(Drug Control Division)에 제출해야 함. 소요 시간 : 2주
- 2단계** - 회사는 약물 품질 및 표준 제어 방식 인증 신청서를 FDA에 제출해야 함. FDA가 의학부(MSD, Medical Sciences Department)의 약물분석부(Drug Analysis Division)에 신청서를 보내면 이곳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임. 소요 시간 : 3~4개월
- 3단계** - 회사는 약품 등록 신청서를 FDA의 약물관리부(Drug Control Division)에 제출해야 함. 소요 시간 : 3~4개월
- 제품 등록 허가를 위해 FDA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해당 제품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 다르며, 최근 FDA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제품	수수료	식료품	수수료
신약	2,000바트(미화 약 46달러)	일반 식품	-
일반 약품	위와 동일	관리 식품	5,000바트(미화 약 115달러)
생약	500바트(미화 약 12달러)	의학 식료품	위와 동일

- FDA는 2년간 약품의 수입이 없을 경우 약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FDA에서 허가가 약물법(Drug Act)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FDA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때때로 포장이나 라벨링이 기술적 관문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및 라벨링 또한 더욱 강조되어야 함.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① 약품 생산업체명 및 소재 지역
  - ② 생산날짜
  - ③ “위험 약품”, “특수 관리 약품”, “외용약”, “특수 용도” 등의 단어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시
  - ④ “만료”라는 단어 및 약품의 유통기한(관계당국이 약물법(Drug Act) 76조 7항 및 8항에 따라 발표한 약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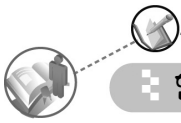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참 고〉

### ■ 식품 및 농산물 정책

- 식품 및 농산물 정책은 세계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식품 및 농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자들의 조직과 생산자들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농공업 및 농업 분야의 적절한 기술, 연구, 발전을 적용하여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입 활용률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킴
  - 모든 면에서 농산물 시장의 기반시설을 향상하고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촉진함
  -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간의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이고 농업 정책 계획에 생산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킴
  - 생산자들의 상호 학습 과정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함
  - 생산량,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보다 강력한 지역 경제를 증가시켜 역량을 강화함
  - 지속 가능한 농산품의 기준을 세움
  - 생산지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고 생산자 조직과 기업들간의 신용 네트워크를 개발함

### ■ 태국 식품 산업의 강점 및 약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충분한 공급처 및 쌀, 새우, 열대 과일(파인애플, 두리언, 용안 등) 등 다양한 식품의 세계적 생산 기지</li> <li>• 자본, 기술, 관리기술, 숙련된 생산 과정, 주문량의 유동성을 겸비한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적기 납품 가능</li> <li>• 세계적인 품질의 식품 공급업자로서의 좋은 이미지 Malee, Singha, SSF, Select Tune, Rosa 등의 더 많은 태국의 브랜드 제품이 수출되고 있음</li> <li>• 정책 수립,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분이 상호 협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와 비수확기 간의 과일류 유통이 불균형함. 해외에서 소비되기에는 과일류의 유통기한이 짧음.</li> <li>• 제품을 생산지에서 항구/공장까지 수송하는 물류 시스템이 충분치 않음.</li> <li>• 원재료가 충분치 않아 수입에 의존함(예, 참치 및 동물 사료).</li> <li>• R&amp;D 부족. 대개 주문생산</li> <li>• 수입국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태국 식품의 측정 결과는 그러한 수입국의 기준보다 낮음</li> <li>• 수입 원재료 때문에 포장비가 높음</li> <li>• 해외 시장에서의 유통 기술이 부족함.</li> <li>• 수출 전 식품 검사는 많은 실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지불됨.</li> </ul>



■ 식품의 범주 및 관련 법률

범주 1 : 특수 관리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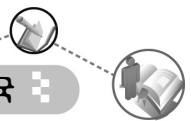
범주 2 : 품질 및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정된 식품

범주 3 : 라벨을 부착하도록 지정된 식품

■ 범주 1 : 특수 관리 식품

유형	공중 보건부 공지	승인 받은 분야
1. 밀봉음료	(No. 214) B.E. 2543 (2000) 및 (230) B.E. 2544 (2001)	밀봉음료나 건조 음료(특히, Rosella, Chrysanthemum, Luo Han Gua, Bael Fruit, Ginger, Galangal, Asiatic Pennywort, Lemon Grass, Pandanus, White Mulberry, Lemon, Longan, Lychee, Tamarine, Indian Gooseberry) 및 밀,사탕 수수, 옥수수, 염주나무, 연꽃씨, 강낭콩, 땅콩으로 만든 음료(탄산 음료나 과산화 처리된 음료 제외)
2. 시클람산나트륨 및 시클람산나트륨 함유 식품	(No. 113) B.E. 2531 (1988)	×
3. 영아용 조제 우유 및 이유기 영·유아용 조제 우유	(No. 156) B.E. 2537 (1994)	×
4. 향이 첨가된 우유	(No. 266) B.E. 2545 (2002)	×
5. 배양 우유	(No. 46) B.E. 2523 (1980) 및 (No. 99) B.E. 2529 (1986)	×
6. 우유(Cow's Milk)	(No. 265) B.E. 2545 (2002)	×
7. 기타 유제품	(No. 267) B.E. 2545 (2002)	×
8. 식품 첨가물	No. 84 B.E. 2527 (1984) 및 No. 119 B.E. 2532 (1989)	×
9. 영아용 식품 및 이유기 영·유아용 식품	No. 157 B.E. 2537 (1994) 및 No. 171 B.E.2539 (1996)	×
10. 체중 조절용 식품	No. 121 B.E. 2532 (1989)	×
11. 영·유아용 보조 식품	No. 158 B.E. 2537 (1994)	×
12. 밀봉식품	No. 144 B.E. 2535 (1992), No. 179B.E. 2540 (1997), (1997), 및(No. 253) B.E. 2545 (2002)	×
13. 아이스크림	(No. 222) B.E. 2544 (2001) 및 (No. 257)B.E. 2545 (2002)	분말아이스크림을 제외한 모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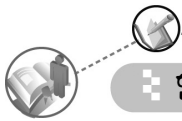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주 : X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지 못했음을 의미. /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었음을 의미. 해당란에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가 부분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의미



범주 2 : 품질 및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정된 식품

유형	공중 보건부 공지	승인받은 분야
1. 커피.	(No. 197) B.E. 2543 (2000) 및 (No. 276) B.E. 2546 (2003)	/
2. 옥화염*	No. 153 B.E. 2537 (1994)	/
3. 비타민강화쌀	No. 150 B.E. 2536 (1993)	/
4. 알칼리성 저장 계란	(No. 236) B.E. 2544 (2001)	/
5. 크림	(No. 208) B.E. 2543 (2000)	/
6. 전해질 음료	(No. 195) B.E. 2543 (2000)	/
7. 초콜릿	No. 83 B.E. 2527 (1984)	/
8. 차	(No. 196) B.E. 2543 (2000) and (No. 277) B.E. 2546 (2003)	/
9. 특정 종류의 소스	(No. 201) B.E. 2543 (2000)	/
10. 밀봉 두유**	(No. 198) B.E. 2543 (2000)	/
11. 식초	(No. 204) B.E. 2543 (2000)	/
12. 땅콩유	No. 23 B.E. 2522 (1979) 및 (No. 233) B.E. 2544 (2001)	/
13. 아자유	No. 57 B.E. 2524 (1981) 및 (No. 235) B.E. 2544 (2001)	/
14. 팜유	No. 56 B.E. 2524 (1981) 및 (No. 234) B.E. 2544 (2001)	/
15. 버터유	(No. 206) B.E. 2543 (2000)	/
16. 지방 및 기름	(No. 205) B.E. 2543 (2000)	/
17. 어장유	(No. 203) B.E. 2543 (2000)	/
18. 천연 광천수	(No. 199) B.E. 2543 (2000)	/
19. 버터	(No. 277) B.E. 2544 (2001)	/
20. 꿀**	(No. 211) B.E. 2543 (2000)	/
21. 치즈	(No. 209) B.E. 2543 (2000)	/
22. 마가린	(No. 207) B.E. 2543 (2000)	/
23. 버터기름(Ghee)	(No. 226) B.E. 2544 (2001)	/
24. 콩 단백질을 가수 분해하거나 발효하여 만든 식품 조미료	(No. 202) B.E. 2543 (2000) 및 (No. 248) B.E. 2544 (2001)	/
25. 밀봉 잼, 젤리, 마멀레이드	(No. 213) B.E. 2543 (2000)	/
26. 로열젤리 및 로열젤리 제품***	(No. 212) B.E. 2543 (2000) 및 (No. 241) B.E. 2544 (2001)	×
27. 반가공식품	(No. 210) B.E. 2543 (2000)	/
28. 밀봉 식수	No. 61 B.E. 2524 (1981), No. 135 B.E. 2534 (1991), (No. 220) B.E. 2544 (2001) 및 (No. 256) B.E. 2545 (2002)	/
29. 얼음	No. 78 B.E. 2527 (1984), No. 137 B.E. 2534 (1991) 및 (No. 254) B.E. 2545 (2002)	/

주 : 식품 기록 신청서(양식 Sor Bor.5)의 제출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장관이 제출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지정한 제품으로 식품라벨부착신청서(양식 sor Bor. 3)를 제출해야 함. X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었음을 의미함.



범주 3 : 라벨을 부착하도록 지정된 식품

유형	공중 보건부 공지	승인 받은 분야
1. 빵	(No. 224) B.E. 2544 (2001)	/
2. 밀봉 소스	(No. 200) B.E. 2543 (2000)	/
3. 요리용 식염수	(No. 225) B.E. 2544 (2001)	/
4. 현미가루	No. 44 B.E. 2523 (1980)	/
5. 마늘 제품*	(No. 252) B.E. 2544 (2001)	×
6. 일부 육류 제품	(No. 243) B.E. 2544 (2001)	/
7. 향미료	(No. 223) B.E. 2544 (2001)	/
8. 가공 젤라틴 및 젤리 디저트	No. 100 B.E. 2529 (1986) 및 (No. 263) B.E. 2545 (2002)	/
9. 꿀 및 사탕	(No. 228) B.E. 2544 (2001)	/
10. 즉석요리식품(Ready-to-Cook Food) 및즉석섭취편의식품(Ready-to-Foods)	(No. 237) B.E. 2544 (2001)	/
11. 특수목적식품	(No. 238) B.E. 2544 (2001)	/
12. 방사선 조사 식품	No. 103 B.E. 2529 (1986)	×
13. 특정 유전자 변형/유전자 공학 기술을 통해 제조된 일반 식품	(No. 251) B.E. 2545 (2002)	/

주 : \*장관이 제출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지정한 제품으로 식품라벨부착신청서(양식 sor Bor. 3)를 제출해야 함. X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는 해당 분야가 승인되었음을 의미함.

- FDA 관계자에 따르면, 인삼 제품이 특수목적식품을 의미하는 보조 식품으로 분류된다면 인삼 제품은 범주3(라벨을 부착하도록 지정된 식품) 그룹에 포함될 것임

■ 적용 방법

범주 3 :

수입업자:

- 양식 Orr.6 및 양식 Sor Bor. 5를 작성하여 신청 (“특수목적식품” 및 “마늘 제품”은 예외적으로 양식 Sor Bor.3을 작성하여 신청)
- Orr.6 양식 및 양식 Sor Bor.5를 작성하여 신청 (“특수목적식품” 및 “마늘 제품”은 예외적으로 양식 Sor Bor.3을 작성하여 신청)





양식 Orr.6

파일NO. ....
날짜 .....
(관계자용)

### 태국으로의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양식

작성지.....

일..... 월 ..... 년 .....

I. 신청자 성명.....나이.....세  
 국적/.....ID 카드 No. .... 발행지.....  
 주소.....Trok/Soi.....Road.....Commune No.....  
 Sub-District/Tambon .....District/Amphur ..... Province.....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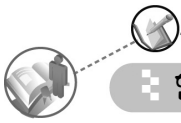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II. 다음의 이름으로 태국으로의 식품 수입을 허가 신청함  
 .....(운영자 .....)(사업체명)  
 수입사무소명.....주소.....  
 Trok/Soi ..... Road.....Commune No.....  
 Sub-District/Tambon.....District/Amphur.....Province.....  
 전화.....  
 식품 창고 주소.....Trok/Soi.....Road.....Commune No.....  
 Sub-District/Tambon ..... District/Amphur..... Province.....  
 전화 .....

III.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

.....

.....

- IV. 다음의 신청 근거를 동봉함
- (1) 식품의 품질, 저장에 사용되는 장비 관련 세부 사항 2부
  - (2) 수입사무소, 저장 창고, 인접 건물 지도 2부
  - (3) 창고 내부 평면도 2부
  - (4) 태국 국내 등기부등본 1부(사본가능)
  - (5) 사업의 목표와 및 공식 대표자를 명시한 기업 등기부 등본 1부(사본가능)
  - (6) 사업 운영 신청서를 허가하는 법인으로부터의 인증
  - (7) 무역 및 거래 등록증 1부(사본가능)
  - (8) 통상부가 발행한 법인의 국적 인증서 1부



신규 신청서

.....

허가 No. ....

### 태국으로의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일.....월.....년 .....

1. 이름....., 나이.....세, 민족 ....., 국적.....  
위 본인은 사업체의 운영자/태국으로의 식품 수출을 허가 받았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입 장소 주소.....

.....전화.....식품 저장 장소의 주소.....

.....

.....

.....전화.....

- 2. 본인은 식품을 저장할 때 다음의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함.
- 2.1 저장 장소의 외부 환경이 적합하며 통풍이 잘 되는 시설임.
- 2.2 식품 저장 장소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물의 명백한 용도는 식품 저장 창고임.
  - 본 건물은 식품과 .....등의 제품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함.
  - 본 건물은 주거 또는 선별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상업 용도의 건물임.
  - 본 건물은 주거용으로는 사용 될 수 없는 상업 용도의 건물 임.
- 2.3 식품 저장 장소의 면적은.....평방미터 임.
- 2.4 식품의 저장은 본 인증서의 첨부 문서에 따릅니다.
- 2.5 충분한 선반이나,바닥으로부터 약 8인치 떨어진 단상에서 식품을 보관함.
- 2.6 식품 저장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음.
- 2.7 “태국으로의 식품 수입 장소”임을 표시하는 2개의 표지를 사무실 앞과 식품 저장 장소 앞에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함.(식품 저장 장소와 수입 사무소가 같은 장소가 아닐 경우)
- 2.8 “식품 저장 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식품 저장 장소 앞에 부착함.
- 2.9 각 유형별로 식품 이름에 관한 표지(총.....개)를 식품 저장 장소에 걸거나 부착함.